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3.

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따로 붙임

4. 검토 의견: 따로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6년 12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,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(안 제4조 등).
- 나. 체비지를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납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(안 제8조제1항제1호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「지방재정법」과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이 각각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,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,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며,
- 체비지를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하여 분할납부에 통일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